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본격화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착공 -
- 국내외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명품건물 건설로 녹색성장 선도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중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착공하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는 11월 2일(수) 본사「나주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착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 국무총리실 김석민 사무차장, 지식경제부 김정관 차관, 최인기 국회의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한국전력이 신사옥 완공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중심기업으로 뿌리를 내려 모든 시도민이 함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희망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의지를 밝혔다.
-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이전이 완료되면 ‘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 기반과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 한국전력공사는 연 매출 39조원(10년 기준), 총 인원 1만 9천여명의 임직원(광주전남 본사이전 1,425명), 3조 600억의 예산을 집행(11년 상반기 기준)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이전완료시 동반이전 기관인 전력거래소, 한전 KDN, 한전 KPS 및 연관기업들과 에너지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 한편, 한국전력공사 신사옥은 지상 31층, 연면적 93,222m<sup>2</sup>의 규모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지중축냉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 에너지 명품건물을 건설 할 예정이다.
- 특히, 신사옥은 ‘에너지 소비형 건물’에서 ‘생산형 건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범사례 구현을 위해, 에

- 너지효율 1등급·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지능형 건축물 1등급·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였고, 업무용 건물로는 국내 최대의 신재생설비(6,750kW)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급률 42%를 달성하고, 최저 에너지 소비건물(180kWh/m<sup>2</sup>·년)로 건설 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신사옥에 설치될 다목적 대강당, 컨퍼런스홀, 디지털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도시내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및 자전거 충전소 계획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이번에 한국전력공사 이전청사가 공사에 들어가면, 건설과정에 지역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고용창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에서 지역건설회사가 총 건축 공사비의 40% 이상 공동도급 하도록 제도를 개선(1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이번에 착공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비 약 1,853억원 중 741억원 이상을 지역건설업체가 수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한국전력공사 이전청사 착공식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80개 공공기관\*의 청사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34개 기관 기착공

# 이 모 저 모

## 참고 1

### 혁신도시 추진현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 : 147개 중 147개 이전기관 이전지역 확정
- 혁신도시 건설(9월 말 기준) : 정상추진 중
  - \* 2012년 말까지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
  - 부지조성 : 전국 평균 71.8%

- \*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공정률 93.9%로 이전기관 착공은 문제 없음
- 진입도로 : 62.4%
- 상수도 : 70%
- 분양: 혁신도시 분양면적 2,736m<sup>2</sup> 중 59.6%(1,630m<sup>2</sup>) 분양완료
- 이전공공기관 착공현황(34개 기관)

월 별	기관명 (소관부처, 이전지역)
'11년 10월	<p>〈준공 9개〉 국립특수교육원(충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남), 식품의약안전평가원(충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남), 질병관리본부(충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경찰교육원(충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충남), 식품의약품안전청(충남)(이상 개별이전)</p> <p>〈시공 중 25개〉 국토해양인재개발원(국토부·제주), 한국주택보증(국토부·부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상 금융위·부산), 한국남부발전(지경부·부산), 국립해양조사원(국토부·부산), 해양경찰학교(국토부·개별),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경부·경북), 우정사업정보센터(지경부·광주전남), 산림항공본부(농림수산식품부·개별), 중앙신체검사소(국방부·대구), 한국도로공사(국토부·경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상 농림수산식품부·전북), 한국도로공사(국토부·경북), 한국가스안전공사(지경부·충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노동부·울산), 근로복지공단(울산), 산업인력공단(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부·울산), 대한지적공사(국토해양부·전북)</p>

[한국건설신문 2011.10.10]

## 저층 건축물 내진설계의무화 개정 철회권고… 생명책임 논란 확대될 듯 규개위 “비용에 비해 실익 부족해”

국토해양부에서 발의한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철회권고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의 추가가 예상된다”며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지진발생 및 피해현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철회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국민들과 관련단체들은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내진설계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만 해당해 1~2층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여기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명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에 대해 대비할 때 몇 층 이상만 내진설계

를 하라고 명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지진피해는 1~2층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내진전문가들은 1~2층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그 비용 증가는 크지않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선 3층 이상 건물에 거주하는 국민만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고 1~2층 건물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지진의 발생으로 다 죽으라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성준 국토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정안이 철회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재상정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선영 기자

## 저층 내진설계 의무화 사실상 '무산'

### 규제개혁위, 국토부 추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권고

2층 이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도입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에 이 법안을 철회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결과에서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의 추가가 예상되나 건축물에 영향을 정도의 지진발생 및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회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건축물 내진성능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의한 근거자료의 제시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확인 대상을 일부 건축물에서 일부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외국사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등 안전확인 대상물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유를 철회 권고 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안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이 법안 도입을 추진해 온 국토부는 철회 권고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이 기증된다는 이유로 철회 권고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범위 조절, 시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원안대로 도입될 가능성성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법안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즉 국토부의 이번 법안처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 대다수의 법안이 도입되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저층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층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도입에 반대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규제라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내진전문가들이 1~2층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그 비용증가는 크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층 이상 건물에 거주하는 국민만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고 1~2층 건물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다 죽으라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 교수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것을 규제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진이 발생해서 저층 건축물의 국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며 질타했다.

조상은 기자 cse@ikld.kr